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4월 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4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상위법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문구 및 용어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제11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명시(안 제6조)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추가 정비(안 제8조)
- 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4. 16.)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4. 4.
- 회부일자 : 2024. 4. 16.
- 상정일자 : 2024. 4. 16.

2. 제안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상위법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문구 및 용어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제11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명시(안 제6조)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추가 정비(안 제8조)
- 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운영 범위 및 방법 등은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거조항 및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 를 ‘보조기기’ 로 순화하고자 함1).
- 안 제6조(운행시간 및 지역)는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중 (현행) 인접생활권을 (개정) 서울특별시로 명시한 것으로

1) 조례안 제8조, 제10조가 해당됨.

시·군의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중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하도록 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추가함(③,④).

※ 이용대상: ①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 이용자 ② 임산부 등 ③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우리 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권범위 내에서 규정되었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붙임 2]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
----------	-----

제출년월일 : 2024. 4.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상위법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함.

2. 주요내용

- 가. 제5조 및 제6조, 제11조 : 부령 제6조제2항 ⇒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개정
- 나. 제6조제3항(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추가
- 다.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삭제
- 라. 제8조제1항 : 이용대상자 추가
- 마. 제12조 : 법 제16조제10항 ⇒ 법 제16조제2항 개정 및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을 규정
- 바. 상위법 인용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부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첨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2. 28. ~ 2024. 3. 22.) 결과,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사무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령 제6조제2항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령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령 제6조제2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령 제6조제2항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접생활권으”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령 제6조제1항제4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장구이용”을 “보조기기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부령 제6조제1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부령 제6조제1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보장구 급여”를 “보조기기 급여”로, “보장구 지원기간”을 “보조기기 지원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부령 제6조제2항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령 제6조제2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를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으로, “(이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을 “(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원칙)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u>별시행규칙</u>(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해당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그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p> <p>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u>부령 제6조제2항제2호</u>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u>부령 제6조제2항</u>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제6조(운행시간 및 지역) ① <u>부령 제6조제2항제1호</u>의 특별교통수</p>	<p>제5조(운영원칙) ① ----- ----- -----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u>(이하 “<u>시행규칙</u>”----- ----- ----- ----- -----.</p> <p>② ----- ----- <u>시행규칙</u> <u>제6조제3항제2호</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시행규칙</u> <u>제6조제3항</u> ----- ----- ----- ----- -----.</p> <p>제6조(운행시간 및 지역) ① <u>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u>-----</p>

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령 제6조제2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과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소를 가진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부령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

1. 관련규정에 따른 보장구이용 대상자

-----.

②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

③ -----

-- 서울특별시-----.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대상자) -----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
-----.

1. ----- 보조기기 이
용 -----
--

2. (생략)

<신설>

<신설>

제9조(등록 및 심사 등) ①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등록 및 심사 등) ① -----

1.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2. -----

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생략)

3. (생략)

② ~ ⑦ (생략)

제10조(이용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이하 “이용기간”이라 한다)은 제9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기간

----- 보
조기기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기간) ① -----

-----.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 보조기
기 급여 -----
----- 보조기기 지원기간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 (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며,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⑦ ~ ⑨ 생략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전문개정 2012. 6. 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생략

② 생략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생략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본조신설 2023. 5. 30.]

[제14조의5에서 이동 <2024. 1. 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2023. 7. 20.>

[헌법불합치, 2019헌마1234, 2023.5.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이용자 확대에 따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
- 교통약자의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수의 차량을 운행중에 있어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경비는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유류비로 계산함
- 소요금액 : 12,800천원/년

$$\frac{100\text{명(추가등록예상)} \times 20\text{회(연간 이용횟수)} \times 40\text{km(1회 이동거리)}}{10\text{km/ℓ(차량연비)}} \times 1,600\text{원/ℓ(연비)}$$

2. 미침부 근거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연락처	(033) 330 - 2019